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서

설명자: 여성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양성평등한 구정참여를 위해 제1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양성평등 공직참여를 위해 제1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였고,
- 제26조제2항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조례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부칙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중 위

원회 대행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 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3. 10. 4일부터 10.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3. 11.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조례 개정으로 직접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3153
----------	----------

제출년월일: 2023. 11. 3.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12조~제15조, 안 제19조)
- 나.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 규정 마련(안 제26조)
- 다.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7조~제36조)

3. 참고사항

-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다.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3. 10. 4.~10. 24.)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규칙심의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7조”를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목 “(모·부성 권리 보장)” 을 “(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모·부성 권리를” 을 “모성권·부성권을”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을 “장애인” 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의한” 을 각각 “따른” 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설치) ①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양성평등정책 목표 및 방침
2. 양성평등정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양성평등교육·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② (생략)</p> <p>제12조(구정참여의 확대) <신설></p> <p>(생략)</p> <p>제13조(공직참여) <신설></p>	<p>제1조(목적) ----- 「양성평등 기본법」 및 ----- ----- ----- -----.</p> <p>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구정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제13조(공직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 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삭 제>

제1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모·부성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
-----모성 권·부성권-----

-----.

제19조(복지증진)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복지증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장애인-----

-----.

제25조(단체 등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제18조에 의한 권익증진사업
6.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여성 복지사업
7. (생략)
③ (생략)

제25조(단체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따른 -----
6. ----- 따른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설치)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제26조(설치) ① 양성평등정책 및

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신 설>

<신 설>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목표 및 방침
2. 양성평등정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양성평등교육·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양성평등정책 목표 및 방침
2. 양성평등정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양성평등교육·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

<삭 제>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 의원

2. 여성·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

<삭 제>

발능력이 있는 사람

6.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
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
관의 대표 또는 종사하는 사람

7. 기타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 있
는 사람

제2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3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
촉할 수 있다.

<삭 제>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직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
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3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
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
-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 2021. 4. 20.>

-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개정 2021. 4. 20.>

-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